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갑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4. 7.

발 의 자 : 서갑원 · 강창일 · 김효석
양승조 · 김진표 · 김재윤
김성곤 · 김영진 · 박대해
김상희 · 전해숙 · 백재현
박기춘 · 최영희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사회책임투자는 투자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숨겨진 가치와 위험을 파악하여 다른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영위하려는 투자기법으로 2009년 3월 기준 국내 사회책임투자규모는 국민연금의 6,6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조 600억원 정도임.

사회책임투자자는 재무적인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을 통해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있음. 이러한 사회책임투자가 늘어나게 되면, 기업은 자사에 대한 자본투입의 기회를 얻기 위해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관련된 가치를 올

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전반에 대한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,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도 제고될 것임.

이처럼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하게 되면, 투자대상 기업들의 사회책임 경영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.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 공급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장기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이와 같이 기업의 가치상승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사회책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에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, 이를 공시하도록 함(안 제102조제5항 신설).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제1호·제3호·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으로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~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제2항제1호·제3호·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 원칙으로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